#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895호 2024. 7. 4.(목)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4-11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1 ○ 사천시 고시 제2024-11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4-958호 도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 3 ○ 사천시 공고 제2024-960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 · 사용) 허가 고시(공고) ----- 5 ○ 사천시 공고 제2024-980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공시송달 공고------6 ○ 사천시 공고 제2024-985호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7 ○ 사천시 공고 제2024-994호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7 ○ 사천시 공고 제2024-995호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6 ○ 사천시 공고 제2024-998호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회 람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831-2276 / FAX 831-6012

제895호

#### 사천시 고시 제2024-115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4년 7월 4일

#### 사 천 시 장

#### 1. 하천점용 현황

점용자	성	玛	한국전력공사	주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0번길 13					
하천명				죽천천(지방하천)							
	초전리 1997번지										
과 후 게 수	면	적	$43\mathrm{m}^2$								
점용개요	7]	간	영구								
	목적	및 개요	사천 항공국가산업단지 전력공급(D=0.67m, L=64.0m)								
열람서류 : 관련서류 1부(건설과 비치)											

- 신청사유 : 하천점용허가

제895호

#### 사천시 고시 제2024-117호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우주항공복합도시 도시개발사업』예정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24년 7월 4일

#### 사 천 시 장

#### 1. 제한지역 위치 및 면적

사 업 명	위 치	면 적(m²)	용도지역	비고
도시개발사업 (우주항공복합도시)	사천시 용현면 일원	(당초) 6,221,383.4 (변경) 5,641,127.4	농림지역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3종일반주거지역	

#### 2. 제한사유

○ 『도시개발사업(우주항공복합도시)』예정지에 대하여 개발계획 수립 시까지 무분별한 개발행위 및 부동 산 투기로 인한 향후 개발사업 등의 장애요인 사전예방

#### 3. 제한내용: 다음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개발행위 제한

- 기존 거주자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수 있는 건축물의 증축에 한함)과 가설건축물 건축
- O 토지의 분할, 공익사업,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

#### 4. 제하기간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 가능), 제한기간 내에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지구지정의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시 까지로 함.

#### 5. 개발행위 제한지역 결정 및 지형도면

O 게재생략

#### 6. 기 타

○ 관계도서는 사천시청 도시과(☎ 055-831-3165)에 비치 열람 가능함.

제895호

사천시 공고 제2024-958호

# 도로사용 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사용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7월 4일

사 천 시 장

- 1. 도로의 종류 : 시도(시도15호선(배춘마을)확포장공사)
- 2. 노선번호 및 노선명 : 15호선(배춘마을)
- 3. 사용개시구간 : 연장 L=0.52km(신설 2차로)
  -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556-10 ~ 574-5
- 4. 개시일시 : 2024. 7. 4.
-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4.07.19.까지
- 2) 열람장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도로과(☎831-3375)
- 6. 비 고 : 「시도15호선(배춘마을)확포장공사」 완료에 따른 도로

사용개시

제895호



제895호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 사천시 공고 제2024-960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7월 4일

#### 사천시장

시행자	상호 및 명칭	한국전력공사				
(점용・사용자)	대표자 (성 명)	한국전력공사 자천지사	경상남도 청 로210번길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 13	
소	하천명	선진천				
	위치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 719번지 일원				
공사 (점용·사용)	면적	3 m²		지(廢川敷地) 상 면적	m²	
개요	기간	영구				
	목적 및 사유	사천항공국가산업단 공급(D=0.67m, L=4.				

제895호

#### 사천시 공고 제2024-980호

##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미필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정기검사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7, 4,

## 사 천 시 장

1. 공고제목: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연번	건설기계번호	소 유 자	등록원부상 주소	등 기 번 호 (배 송 지)	비고
1	경남04도1153	삼천포*** 영농조합법인	경상남도 사천시 노례길 **(노룡동)	1094854257422 (사천시 시청로 77 건설과)	폐문부재
2	경남04소1173	주식회사 **에이엠티	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154-**	1094854259757 (사천시 시청로 77 건설과)	기타

- 3. 공고기간: 2024. 7. 4. ~ 2024. 7. 18.(14일간)
- 4. 공고방법: 사천시청 홈페이지 및 공보
- 5. 문 의 처: 사천시청 건설과 건설행정팀 건설기계 담당(전화: 055-831-3261)
- 6. 공시송달내용
  - 가.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소유자에 대하여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를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 나. 건설기계소유자께서는 경남건설기계검사소(전화: 055-586-5622)로 정기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아울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설기계관리법」제44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만료일 후 30일 이내: 10만원 / 만료일 후 30일 초과: 3일마다 10만원 가산)됩니다.
  - 라.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제1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제895호

#### 사천시 공고 제2024-985호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각종 정부 시책 추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할인 형태 및 할인율을 신 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할인 형태 및 할인율 신축 조정에 관한 규정 추가(안 제15조)
- 나.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식 등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895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지역경제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3076,

FAX: 831-6031)

# **^1 천 시 공 보**

ス	· 1895호		
	입 법 예	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રોડીઓ દો જીવનો દાશિયા નો	^ ^1
	□ 자치법규명: 사전시 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	운용 조례
	○ 성명(단체명):		
	O 주 소:		
	O 생 년 월 일:		
	O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1			

제895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9조의2제2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중 "할인하여"를 "할인하거나 캐시백 적립 형태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정부 시책 추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보안장치)"를 "제16조(보안장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 .>

	사천	사랑상품	권 가	갱점	등록	신청서	
	상 호			업 (취급품	종 <del>'</del> 목)		
	대표자			생 년 월 성		( 남, 여	)
   신	사 업 자			전화변	<u></u> 호:		
천   청	등록번호			(휴대곡	폰:		)
	사 업 소						
인	소 재 지						
	주 소						
	환전계좌	은 행 명:		계좌기	번호:		
	선사랑상품전	사랑상품권 발행 원 가맹점 등록· 신 <b>청 인</b> :	을 신청힙		일	(서명 또는	
■ 개인	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서				
<b>▶</b> 개	인정보 수집·이		T	A T. (	NO 5 7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b>항 목</b> ;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	시업소 소재기	사천사랑성	<b>기용목적</b> 상품권 가맹점	<b>보유·이용</b> 기맹 종료 후	
<u>은행</u> 당	병 계좌번호, 예금주	등명 매출액 확인을 위한고	세정보	등록 및	환전·정산	 동의 □	미동의 □
II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b>공목적</b> 링상품권   성명 생년월일	<u>제공</u> 성별 주소, 연락	<b>항목</b> 첫 시압등록반	호 시압소소재	<b>보유·이용</b> 기 가맹 종료 후	
<u></u>	융기관 환전	<u>1.정산 ○은행명 계좌번</u>	호 예금주명 미	출액 확인을 위	한 새정보	기 등 등표 후 동의 □	미동의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할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이 불가합니다.							
l	시장 구	(하	<u> </u>	100 07	, E (B   T		
구비	서류 사약	업자 등록증 사	본 1부.				

	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									
	(가맹점 등록번호 : 사천 - 호)									
	대 표	. 자				생 년 월 성	일 별	( 남,	여 )	
신 청	상	호				사 업 7 등록번호	•			
인 인	사업					전화번.				`
	소 재	시				(휴대폰	:			)
	주	소								
신청	변 경	전								
사항	변 경	후								
변경 사유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천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또는 인	)		
사	사천시장 귀하									
구비	1. 가맹점 등록증(분실 시 생략) 1부. 2. 사업자 등록증(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1부.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
리) ① (생 략)	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2
체결한 경우 협약 체결일부터 1	
0일 이내 시 <u>홈페이지</u> 에 그 내	<u>누리집</u>
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b>.</b>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제9조의2(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	2
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	
우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등록 취소일부터 10일 이내 그	
사실을 시 <u>인터넷 홈페이지</u> 에	<u>누리집</u>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할인판매 및 수수료) ①	제15조(할인판매 및 수수료) 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권면금액의 100분의 10	
의 범위에서 <u>할인하여</u> 판매할	<u>할인하거나 캐시백</u>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은 제외할	<u> 적립 형태로</u>
수 있다.	
<u>&lt;신 설&gt;</u>	② 시장은 정부 시책 추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u>있다.</u>
<u>②</u> ~ <u>④</u> (생 략)	<u>③</u> ~ <u>⑤</u>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u>제16(보안장치)</u> (생 략)	제16조(보안장치) (현행과 같음)

## 신・구별지대비표

7	현	행			개	ろ		<u>가</u>	
[지 제1호서식] <신설	2020.12.17.>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	4>			
사천	선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사천사학	강상품권 가	맹점 등록 4	신청서	
상 호	업종 및			상 호	, _ ,	업	종		
0 3	취급품목			0 1		(취급			
대표자	생 년 월 일 성 별	(남,여)		대 표 자		성	월 일 별	( 남,	여 )
청 사업자	전화번호:		신	사업자		전화	·번호:		
인 등록번호	(휴대폰 :	)	0 -	등록번호		(휴대	H폰:		)
사 업 소 소 재 지				사 업 소 소 재 지					
주 소				주 소					
				환전계좌	은 행 명:		계좌번호		
「사천시 사천사랑상품	F권 발행 및 운용 조례」 :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신세작	는 영 명:		세약빈오		
사천사랑상품권 가맹	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사랑상품권 권 가맹점 등		용 조례」 제8 합니다.	3조제1항에	따라 위와
	년 월	일			., .,	년	월 역	일	41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게이저나	신청		도이다	(서명 5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	천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집·이용 및		동의서		
및 환전거래 시 필요학	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용에 동의함.	$\  \  \stackrel{\blacktriangleright}{\vdash}$	개인정보	수집·이용 니	<b>1</b> 역	ᄼᅱᄾ	007	HONE
		(서명 또는 인)		성명 생녀원의	<b>항목</b> 실생별주4, 연	일 사이 사이 사람	수집·이		보유아용기
<b>사천시장</b> 귀하	요 '0 신 ·	(네요 구는 건)		에 해들를	소재지 연 생활일 위한	명 재배호		권기점점 전정산	기맹 종료 최장 5년
	록증 사본 1부				르크 작건들 취임	· 뉴시아노		의 🏻	미동의 □
:티커교부 (), X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u	-10-1 L
	<b>  정정보 공동이용 동</b>		1111	제공분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1号哈里
	라 완년하여 담당 농두원이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사천사랑 상품권	성명 생년월   등록 <del>)</del> 1호 시	일 성별 주소 ( 언소 사짜기 유학	분차 시압자 행명 계재번호	7맹종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	환전정산	예금평미	업소소재기 온 출액확인을 위	한채정보	최장 5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동의 🗆	미동의 [
				신	! 청 인 :		(서)	명 또는 인	)
			× ?	정보주체는 동	의를 거부할 권	리가 있으며	거부 할 경우에	는 기맹점 등	록이 불기합니
				<b>시장</b> 귀하					
			구비	서류 사	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지 제3호서식] <신설	2020 12 17 >		[변고]	제2중서시1	<개정 202	и >			
		an ana	Le				C = 11 +1 u	1-10 11-21-1	
<b>사전사당</b> ( (가맹점 등록번호 :	<b>상품권 가맹점 등록사항 (</b> 사천 - 호)	변경 신정서					<b>등록사항 변</b> 사천 -		
	생년 월	일 일		-11 -r -1		0 7 6.2.	생년월의		
대표자	성	별 (남,여)		대표자			성 1	<b>ä</b> (	남, 여 )
신 상 호	사 업 등 록 변		신	상 호			사업자		
청 인 사업소	전화번.	Š :	청	사업소	-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휴대폰	)	인	소재지			연화원호. (휴대폰:		)
주 소				주 소			, s		
신 변경	! 전	변 경 후							
청 사			신청						
항			사항	변경 후					
변경			변경		1				
사유			사유						
	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가맹점 등록사항 변경을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와 신청합니다.					운용 조례」 항 변경을 신		항에 따라 -
j1 a1.	년 월 o). (사명 또	일				년	월	일	
신정'	인: (서명 또	는 10			.3		/-3-3	. 41	
사처시장 귀하			1 1		시체인	:	(서명 또	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

가맹점 등록증(분실 시 생략) 1부.

2. 사업자 등록증(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1부

1. 가맹점 등록서 1부 2. 가맹점 등록 계약서(대표자 변경에 한정함) 1부 3.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구비서류

## 관 련 법 규

###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 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95호

#### 사천시 공고 제2024-994호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4일

#### 사 천 시 장

###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사천시 체육진흥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여 적법한 보조금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연임 제한(제6조제1항)
- 나. 보조금 지원 근거 조항 신설(제18조의2)

제895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412,

FAX: 831-6013)

# 사 천 시 궁 보

제895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ul> <li>□ 자치법규명: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li> <li>○ 성명(단체명):</li> <li>○ 주 소:</li> <li>○ 생 년 월 일:</li> <li>○ 전 화 번 호:</li> </ul>						
조례(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제895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체육진흥사업 지원) 시장은 제12조부터 제17조의 체육진흥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및 기관, 학교, 체육·경기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구성) ①・② (생 략)	제5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③
서 시장이 임명 또는 <u>위촉하되, 위</u>	<u>위촉한다</u> .
촉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u>해야 한다</u>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6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	제6조(임기) ①
년으로 <u>한다</u> .	<u>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u>
	<u>있다</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18조의2(체육진흥사업 지원) 시장
	은 제12조부터 제17조의 체육진흥
	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및 기관, 학
	교, 체육·경기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운동경기부 설치) ① (생 략)	제19조(운동경기부 설치) (현행 제1
	항과 같음)

#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제18조의2(체육진흥사업 지원)
-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사천시 체육진흥을 위한 총괄 지원 예산
    - 2024년 생활체육 육성,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예산 기준
  -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중]. 크l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세출	일반회계	3,515,202	3,610,112	3,707,585	3,807,690	3,910,498	18,551,087
	소계(a)	3,515,202	3,610,112	3,707,585	3,807,690	3,910,498	18,551,087
	보조금	48,330	49,635	50,975	52,351	53,765	255,056
ال ما الد	지방세	2,877,480	2,955,171	3,034,961	3,116,906	3,201,062	15,185,580
세입	기금	589,392	605,306	621,649	638,433	655,671	3,110,451
	소계(b)	3,515,202	3,610,112	3,707,585	3,807,690	3,910,498	18,551,087

- ※ 산출내역
- 1차년도
  - · 생활체육 육성(1,954,202천원),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1,561,000천원)
  - 2차년도~5차년도: 물가상승률 2.7% 반영
- 3. 부대의견: 없음

작성자: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1  
재원조달		3,515,202	3,610,112	3,707,585	3,807,690	3,910,498	18,551,087
의존	소 계	48,330	49,635	50,975	52,351	53,765	255,056
재원	보조금	48,330	49,635	50,975	52,351	53,765	255,056
자체	소 계	2,877,480	2,955,171	3,034,961	3,116,906	3,201,062	15,185,580
수입	지방세	2,877,480	2,955,171	3,034,961	3,116,906	3,201,062	15,185,580
기 금		589,392	605,306	621,649	638,433	655,671	3,110,451

-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4년 당초예산에 기 반영
- 3. 부대의견: 없음
- 4.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 관 련 법 규

####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 사천시 체육진흥 조례

제12조(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우수선수의 과학적·체계적 양성 및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전문체육 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육성 및 지원
-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 3. 전문체육 직장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행사 개최 및 참가
-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 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시민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 2. 생활체육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 3. 생활체육 강좌의 설치 및 운영
  - 4.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국내·외 교류
  - 5.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7.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 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 3.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
- 4.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 5.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학교체육의 진흥) 시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 2. 학교운동경기부 및 학교스포츠 클럽 육성 및 운영
- 3.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노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노인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노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 2. 노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 3.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 4. 노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5.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전지훈련의 유치 등) 시장은 체육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 2. 공공체육시설 개방·사용
  - 3.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숙박 등의 지원
  - 4. 그 밖에 시장이 전지훈련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95호

#### 사천시 공고 제2024-995호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4년 7월 4일

#### 사 천 시 장

#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스포츠클럽법」(법률 제18252호, 2022. 6. 16. 시행) 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사천시 스포츠클럽을 육성·지원하여 스포츠복지 향상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목적(안 제1조)
- 나.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회계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라.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95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412,

FAX: 831-6013)

# **^1 천 시 공 보**

제895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O 주 소:							
○ 생 년 월 일:							
O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경	비고					

조례(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제895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사천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천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사천시(이하 "시"라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 3. "공공체육시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895호

- 제3조(스포츠클럽 지원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예산 및 자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세부기준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③ 시장은 법 제15조제3항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따른다.
- 제4조(지원 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 및 자원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보조금의 지원 신청, 결정,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95호

-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 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서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재 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도·감독결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제7조(환수)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사천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액 반영
  - 나. 조례안 제3조(스포츠클럽 지원 등)
- 2. 비용추계의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사천스포츠클럽 운영 지원 예산
    - · 사천스포츠클럽 운영비, 장비구입비, 지도자 활동비, 시민건강 인증센터 운영비,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 국민체력 100사업비 등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세출	일반회계	569,640	585,020	600,816	617,038	633,698	3,006,212
	소계(a)	569,640	585,020	600,816	617,038	633,698	3,006,212
세입	지방세	427,092	438,623	450,466	462,629	475,120	2,253,930
	기금	142,548	146,397	150,350	154,409	158,578	752,282
	소계(b)	569,640	585,020	600,816	617,038	633,698	3,006,212

#### ※ 산출내역

- 1차년도

비용요인	비용(천원)
스포츠클럽 운영비	270,000
선수육성반 장비구입비 지원	20,000
사천스포츠클럽지도자 활동비 지원	36,000
시민건강인증센터 운영비 지원	30,000
전국스포츠클럽 교류대회 지원	10,000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지원	203,640
합계	569,640

- 2차년도~5차년도: 물가상승률 2.7% 반영

3. 부대의견: 없음

작성자: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ᆀ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재원조달		569,640	585,020	600,816	617,038	633,698	3,006,212
의존	소 계	_	-	-	-	-	1
재원	보조금	_	_	-	-	-	1
자체	소 계	569,640	585,020	600,816	617,038	633,698	3,006,212
수입	지방세	427,092	438,623	450,466	462,629	475,120	2,253,930
기 금		142,548	146,397	150,350	154,409	158,578	752,282

-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4년 당초예산에 기 반영
- 3. 부대의견: 없음
- 4.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문화체육과장 김성일

#### 관 런 법 규

#### □ 스포츠클럽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 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수 있다.
-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 동부와의 연계
  -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 3. 연령ㆍ지역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95호

### 사천시 공고 제2024-998호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7월 4일

#### 사 천 시 장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이주직원 등에 대한 지원업무 추진 시 나타난 미흡사항을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신설(안 제5조)
-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다. 입학생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제895호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방문하거나, 사천시청 누리집(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기획예산담당관)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210,

FAX: 831- 6011)

제895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5	규명: 사천시	자치법규	자치법	ᄀ 자:	치법규명: 사천/
---------------------------------	------------------	---------	------	-----	------	-----------

- 성명(단체명):
- **Q** 주 소:
- O 생 년 월 일:
- O 전 화 번 호:

의견	비고
	의견

제895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입학생등"이란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 등을 말한다.

제5조 본문 중 "한다"를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6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895호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 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12조의2(입학생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우수한 입학생등의 모집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기숙사 등 거주지 또는 월세 지원
  - 2. 우주·항공 관련 해외 연수
  - 3. 자기계발 지원금
  - 4. 입학 기념품
  - 5. 공공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입학생등은 시로 주민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 ③ 입학생등은 제1항제5호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발급 받은 사천사랑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95호

제14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제8호"를 "제12조제1항제8호 및 제12조의2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이주직원등"을 각각 "이주직원등 및 입학생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1조 및 제12조"를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5. "입학생등"이란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의 입학생 또는 재학
	생 등을 말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제5조(위원의 임기)
임기는 2년으로 <u>한다</u> . 다만, 보궐	<u>하며, 한 차례만</u>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	<u>연임할 수 있다</u>
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u>5.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u>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u> </u>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
	<u>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u>

현 행	개 정 안
	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
	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u>경우</u>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
	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
	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u>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u>
	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
	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
	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u>하여야 한다.</u>
<u>&lt;신 설&gt;</u>	제12조의2(입학생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우수한 입학생등의 모

현 행	개 정 안
	집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u>수 있다.</u>
	1. 기숙사 등 거주지 또는 월세 지
	<u>연</u>
	2. 우주·항공 관련 해외 연수
	3. 자기계발 지원금
	<u>4. 입학 기념품</u>
	5. 공공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감
	<u>면</u>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u>정하는 사항</u>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입학생등은 시로 주민등록
	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
	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여부와 상
	<u>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u>
	③ 입학생등은 제1항제5호에 따
	<u>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u>
	4조에 따라 발급 받은 사천사랑카
	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천사랑카드의 발급) ① 시	제14조(사천사랑카드의 발급) ① -
장은 <u>제12조제1항제8호</u> 의 지원대	<u>제12조제1항제8호 및 제12조</u>
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u>이주직원</u>	<u>의2제1항제5호 이주직원</u>
<u>등</u> 에게 사천사랑카드를 발급할	<u>등 및 입학생등</u>
수 있다.	·

현 행	개 정 안
② <u>이주직원등</u> 은 제1항에 따른	② 이주직원등 및 입학생등
사천사랑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사랑	
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관계기관의 자료 요청 등)	제16조(관계기관의 자료 요청 등)
① 시장은 <u>제11조 및 제12조</u> 에 따	① <u>제11조, 제12조 및 제12</u>
른 지원 결정 등의 원활한 업무	조의2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시장	제17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
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조례안 제12조의2(입학생등에 대한 지원)
-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2025~2028년 입학생 및 재학생 지원

1) 지원대상 기준: 105명

(단위: 명)

연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 고
입학생수	15	30	30	30	
총학생수	15	45	75	105	

- 2) 지원기간 기준: 2025~2028년 입학생 및 재학생 4년간 지원
- 3) 지원시책: 5개 시책 기준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이후	합 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2081년)	월 세 
加支	일반회계	181,800	447,600	645,600	843,600	1,188,000	3,306,600
세출	소계(a)	181,800	447,600	645,600	843,600	1,188,000	3,306,600
ചി റി	지방세	181,800	447,600	645,600	843,600	1,188,000	3,306,600
세입	소계(b)	181,800	447,600	645,600	843,600	1,188,000	3,306,600

3. 부대의견: 없음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천원)

	2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이후 (2029년 이후)	계
재	원조달	181,800	447,600	645,600	843,600	1,188,000	3,306,600
자체	소 계	181,800	447,600	645,600	843,600	1,188,000	3,306,600
수입	지방세	181,800	447,600	645,600	843,600	1,188,000	3,306,6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5~2031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편성

3.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임정의

### 관 런 법 규

####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 3.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문화·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 4.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 5.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 6.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산업으로 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 7.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 8. "초광역권산업"이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산업 발전을 촉진할 초광역권의 협력산업으로서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 9.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10.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 나.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제외한다.
- 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 금사업지역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11. "농산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13.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에 따라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 1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 다.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15.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물적・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지구・단지・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제27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 16.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 련의 체제를 말한다.
- 17.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18.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 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 체를 말한다.
- 제25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①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혁신도시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혁신도시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유치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이전대상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 3.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 은 혁신도시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 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 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은 제외한다)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이하 "신설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입지 결정에 대한 심의절차, 제출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⑦ 지방시대위원회는 3년마다 공공기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공공기관의 직원 수 등 규모
- 2. 지방세 납부 현황
- 3. 사무소 소재 현황
-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현황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